

2026년 성과보상공제 사업개요

2026. 3.



I.

사업안내

1. 상품안내 및 업무절차

① 내일채움공제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핵심인력)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및 우수인력 유입
- * 핵심인력 : 기업 대표자가 직무여도가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부지원 없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3년 이상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가입기간) 3년 ~ 10년
- (납입비율) 재직근로자 : 중소기업 = 1 : 2(이상)
- (적립금액) 3년간 최소 1,224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

□ 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형주점업 등 일부 제외)
- (근로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 지원내용(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 비용인정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재직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청년근로자 90%) 혜택

【 만기 수령액 예상 금액 】

(단위 : 원)

구 분		내일채움공제(3년형)	내일채움공제(5년형)
공제 청약금	핵심인력 납입금	100,000 (100%)	100,000 (100%)
	기업 납입금	240,000 (240%)	240,000 (240%)
	소계	340,000	340,000
공제금 지급액	핵심인력 납입금 누계액	3,600,000 (10만원×36개월)	6,000,000 (10만원×60개월)
	기업 기여금	8,640,000	14,400,000
		(24만원×36개월)	(24만원×60개월)
	복리이자(2.49%)	481,441	1,345,374
	세전 만기 수령액	12,721,441	21,745,375
	핵심인력 본인납입금 대비	3.53배	3.62배

②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개념

- 기업과 청년공제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근로자1:기업2↑)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한 상품

□ 지원대상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며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36개월로 기간 변경·연장 불가
- (납입) 부금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정액 납부하여 3년간 1,008만원 (월 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수령

③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및 우수인력 유입
- 중진공, 협약은행(기업,하나,국민,농협)간 협력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 (가입기간) 3년, 5년
- (납입비율) 재직근로자 : 중소기업 = 1 : 0.2
- (적립금액) 최소 460만원~3,983만원 (월 12만원 이상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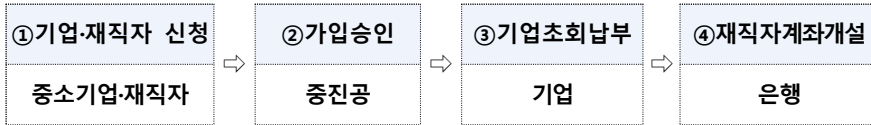
□ 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형주점업 등 일부 제외)
- (재직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 지원내용(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 비용인정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재직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청년근로자 90%) 혜택

□ 가입절차



- ① (중소기업 및 재직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sbcplan.or.kr)
- ② (중진공) 검토 및 청약승인(1~2일 소요)
- ③ (기업) 1회차 납부(2일 소요(계좌보유시 1일))
- ④ (중진공→재직자) 신청링크(카카오톡) 발송(기업납부 다음날)→(재직자) 계좌개설
 ➔ 신청부터 재직자 계좌개설까지 7영업일 소요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 >



【 만기 수령액 예상 금액 】

월 납부금	가입기간	매칭비율	총 기업납입금		예상 만기금	
			3년형	5년형	3년형	5년형
10만원	36개월(3년) 60개월(5년)	20%	72만원	120만원	460만원	797만원
20만원			144만원	240만원	920만원	1,593만원
30만원			216만원	360만원	1,379만원	2,390만원
40만원			288만원	480만원	1,839만원	3,186만원
50만원			360만원	600만원	2,069만원	3,983만원

【 적용 금 리 】

- 최대 4.6%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2.0~2.1%)

* '26년 1분기 기준, 은행별 우대금리 상이

④ 제이울(공통)

구분		'25.4Q	'26.1Q
지급이율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3년)	2.37%	2.49%
	내일채움공제(3년~10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기업납입금)(3년, 5년)		
분할금이율		2.37%	2.49%
중도해지이율	3년 미만	0.30%	0.30%
	3년 이상	0.80%	0.80%
해지후이율		0.30%	0.30%
분할금 중도일괄지급 이율		0.30%	0.30%
공제계약대출이율		4.15%	4.08%

[1Q 적용기간 : '26.01.01 ~ '26.03.31]

- 1) 시중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적용기간 중에도 변경가능
- 2) 지급이율, 분할금이율, 중도해지이율을 제외한 이율은 단리적용
- 3)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활용

⑤ 내일채움공제와 우대저축공제 비교표

구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목적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촉진, 자산형성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기간	3년~10년	3년, 5년
납입비율	핵심인력:기업 = 1 : 2 이상	핵심인력:기업 = 1 : 0.2
상품 구조	적립구조	재직자 + 기업
	적용금리	성과보상공제 기준금리 +은행 우대금리
	적립금액	월 34만원 이상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기준금리 +은행 우대금리 기업 납입금 : 성과보상공제기준금리
		월 12만원~60만원

4. 세제혜택 및 교육·복지혜택

① 세제혜택

- **(기업) 납입금에 대해 ①전액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Max {당기발생액의 25%,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중견 40%)}

- **(핵심인력) 만기(3년연계형의 경우 청년공제만기금 예치 必) 및 중도해지(폐업·휴업·해산)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 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30~90*% 감면**


* (중소기업) 청년 90%, 그 외 50% / (중견기업) 청년 50%, 그 외 30%

- **(감면 불가 대상) 특수관계인 등 일부 인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만기 근로소득세 감면 불가 대상**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세제혜택 관련 법적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손금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의 3호(필요경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시행령 제26조의 6(근로소득세 50% 감면)

② 교육·복지혜택

- **(내일채움 배움채움) ①산업안전 보건교육(법정 4대 의무교육, 이러닝), ②AI교육(오프라인), ③웨비나 명사특강(신기술, 경제분야), ④교육바우처(전화·화상 외국어, 이러닝(직무)), ⑤독서통신교육(전자책 플랫폼) 등 민간 전문 교육 기관의 서비스 무상 제공**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문화·휴양·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기업(10만원)·중진공(10만원)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대한상의)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
- **(단체상해보험) 근로자 사고 시, 실질적 혜택 지원이 가능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보편적 복지 제공**
- **(종합건강검진) 공제 장기유지자(12개월 이상) 대상 건강검진 희망자를 모집·선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무상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 지정 농어촌마을에서 체험·휴양(로컬투어) 시, 공제 가입자 포함 최대 4인 가족까지 마을별 생태·문화체험, 숙박비, 식비 전액 지원**
-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제 가입자 대상 기업부담금 전액 지원(최대 10만원)**

【 공제가입자 휴가비 지원 구조 】

중진공 지원 전	근로자	+	중소기업	+	관광공사	→	근로자
	20만원 (50%)		10만원 (25%)		10만원 (25%)		40만원 (100%)
중진공 지원 후	근로자	+	중진공	+	관광공사	→	근로자
	20만원 (50%)		10만원 (25%)		10만원 (25%)		40만원 (100%)

- **(온라인 복지몰) 내일채움공제 전용 복지몰(폐쇄몰, 최저가보장 등) 지원**